<별지 제3호의4> <신설 2016.1.19., 개정 2017.1.24.>

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

1. 상 호

■ 첨부서류

1-1. 정관(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 1부

1-2. 법인등기부등본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) 1부

1-3. 발기인총회,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2. 본점의 소재지

■ 첨부서류

2-1.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

3. 대표자 및 임원

임원수 : 명(상근: 명, 비상근: 명)

직위	성명	주민등록번호	소유주식수 (비율)	주요 경력	상근 여부	담당 업무	전문인력 여부	임원자격 적합여부

기재상의 주의

1. 임원자격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의2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.

■ 첨부서류

3-1.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(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) 각 1부

3-2.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

4. 경영하려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4-1.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

5. 재무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5-1.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(단,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

에 따라 외감대상인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써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,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) 1부

5-2.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(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)

※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-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6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6-1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(투자광고, 법 제117조의10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,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) 등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

6-2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(중앙기록관리기관 등)과의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각 1부

6-3. 내부통제장치(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)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각 1 부

6-4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·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·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

7.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

- 전문인력의 명단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요경력, 전문자격내용 등)
- 물적설비 현황(사무공간 배치현황, 전산설비 내역,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)

■ 첨부서류

7-1.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

7-2. 사무공간,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

8.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8-1. 등록신청일(금융투자업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)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

8-2.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

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
9.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9-1.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·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

9-2.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

9-3.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

10. 그 밖의 기재사항

■ 첨부서류

10-1.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(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 사본 1부

10-2 외국인투자인가서(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) 사본 1부

10-3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

10-4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※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의4에 따라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 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